

담배소비세 신고서(수입판매업자용)
([]기한 내 신고 []기한 후 신고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① 성명(법인명)		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
	③ 상호(대표자)		④ 사업자등록번호
	⑤ 주소(영업소)		
	⑥ 전화번호 (휴대전화:)		⑦ 전자우편주소

⑧ 담배의 구분	⑨ 품명	⑩ 규격	⑪ 판매 가격	⑫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담배 (미납세·과세면제 제외)		⑬ 공제 · 환급세액 ㉔	⑭ 가산세 ㉔	⑮ 납부할 세액 ㉔-㉔+㉔
				수량	세액 ㉔			
⑯ 계								

지방교육세 신고서

⑰ 과세 표준	⑱ 세율	⑲ 본 세	⑲ 가산세	⑳ 납부할 세액
㉒ 신고세액 합계 (㉑+㉒)				

「지방세법」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

귀하

첨부서류	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·환급증명서(공제·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·환급증명서 총괄표(공제·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□ 기한 내, 기한 후: 해당란에 [√] 로 표시합니다.

□ 인적사항(신고인)란

- ① 성명(법인명): 개인은 성명,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: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③ 상호(대표자): 개인사업자는 상호명,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.
- ④ 사업자등록번호: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,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.
- ⑤ 주소(영업소)
 - 개인: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 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: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,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⑥ 전화번호: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 번호를 적습니다.
- ⑦ 전자우편주소: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(E-mail 주소)를 적습니다.

□ 신고사항란

- ⑧ 담배의 구분: 「지방세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담배를 적습니다.
- ⑨ 품명: 담배의 제품 명칭을 적습니다.
 - ㉠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.
 - ㉡ 「지방세법」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.
 - ㉢ 「지방세법」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

□ 문의사항은 시(군) 과(☎ -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외국산담배에 대한 세액산출 명세서

(년 월 반출분 기준)

납부할 총 담배소비세 ¹⁾ (㉠)		
전년 중 전(全) 시·군에서 매도된 담배	수량	
	담배소비세 ²⁾ (㉡)	

[illegible]

- 1)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
- 2)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
- 3)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

<작성방법>

1. 「지방세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합니다.
2.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하되, 특별·광역시(특별자치시·도 포함)는 시별, 도(특별자치도 제외)는 시·군별로 작성합니다.

※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69조제3항을 적용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본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.